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강창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6. 22.

발 의 자 : 강창일 · 이개호 · 부좌현
황주홍 · 이연주 · 최규성
김광진 · 김우남 · 원혜영
박남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(법률 제12687호, 2015. 1. 1. 시행)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 지방보조금 교부도 곤란한 상황임.

이에 유족의 심사·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,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·3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현재 국무총리 소속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인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함(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).
- 나. 4·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·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의2).
- 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8조의4 신설).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희생자 및 유족을”을 “희생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희생자 및 유족”을 “희생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희생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

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제8조의2 중 “정부는”을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(유족의 결정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같다)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유족 심사·결정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제주4·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, 이 법 에 따라 <u>희생자 및 유족을</u> 심 사·결정하며, 그들의 명예회복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 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희생자 및 유족의</u> 심사·결정 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4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</p>	<p>제3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<u>희생자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희생자</u>----- 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의2. 희생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사항을 처리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·4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8조의2(제주4·3 관련 재단에의 출연)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·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·관리와 추가 진상조사,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2조(재심의)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제주4·3 관련 재단에의 출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
-----.

제8조의4(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심의) ① -----

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위원회(유족의 결정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말한다.
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같다)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